

TROUP COUNTY 교육청

초등학교 출석 협약서 결석, 지각, 조퇴

조지아주 법에 따라 모든 연령의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수업에 빠진 학생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또한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교과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조지아 주 법령 "Georgia Compulsory Attendance Statute, O.C.G.A. 20-2-690. 1,"에 의거하여,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학부모, 가디언 또는 조지아 주에 거주하며 학생을 돌보는 사람 (이하 모두 "책임자"로 지칭)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 법령을 어겨 유죄로 인정된 "책임자"는 관할 법원의 재량에 따라 \$100.00 내의 벌금 그리고/또는 30 일 이내 구속 수감될 수 있다. 결석 횟수에 따라 처벌에 더해진다. 각 학교장은 담당자를 선정하여 이 협약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할 수도 있다..

- ✓ 학생의 몸 상태로 등교할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에 해가 됨
- ✓ 학생의 직계가족 사망
- ✓ 학생의 종교와 관련된 휴일 준수
- ✓ 학생의 건강 혹은 안전에 위협하거나 등교가 불가능한 조건(기상 악화등)
- ✓ 병원, 치과 예약 혹은 법원 출두로, 해당 시간 만큼만
- ✓ 부모 혹은 법적 가디언의 군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

법령으로 부모님 또는 가디언은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니는지 살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처벌받는다.

"Troup County 교육청 출석 협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학년 초에 **책임자**와 10 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은 "Troup County Attendance Protocol"에 서명하고, 서명한 복사본 한 부를 학교 파일에 보관한다.
2. 무단 결석 3 일, 이유 없는 지각 5 번 또는 사유가 불분명한 조퇴 5 번일 경우, 학교는 학생의 이러한 사정을 의논하기위해 **책임자**에게 전화나 서신으로 또는 직접 알려드린다. 연락한 기록을 학교 파일에 보관한다 (첫번째 통지). 또한 **책임자**와 컨퍼런스를 갖고, **책임자**는 "무단결석 통지서"에 서명하고, 학생의 등교를 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책임자**에게 SBRRP 를 만나볼 것을 권유했는데도 **책임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의 교육 태만 민원을 소년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3. 무단 결석 5 일, 이유 없는 지각 7 번 이상, 또는 사유없는 조퇴 7 번 이상일 경우, 학교는 **책임자**에게 서신(2 번째 통지문)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려드리고 **책임자**에게 무단 결석 통지서 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4. 결석, 지각 또는 조퇴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두(2) 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학교는 등기 우편으로 **책임자** 또는 가디언에게 무단결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물 수령증"을 제출하라고 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학생의 이름을 교육청 카운셀러, 가족 지원팀, 행정실 또는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5. 학교 재량에 따른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첫 무단 결석, 이유 없는 지각, 사유 없는 조퇴에 대한 두번의 통지에 회신이 없을 경우 법으로 집행할 것이다.
6. 6~16 세 자녀의 **책임자**의 지속적인 비협조로 인해 학생이 계속 결석할 경우, 학교는 사법당국에 연락하고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학기중 어느때고 학생의 계속되는 무단 결석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 학교는 소년 법원에 교육 기회 박탈죄로 고발한다.
7. 7 일 이상의 무단 결석이 계속되면 학교는, 영장 청구 신청서 대신, 교육 태만 또는 자녀에 대한 교육 제공 불이행 서류를 제출한다.
8. 사법 당국에 제출된 결석 관련 서류를 학교에 보내고, 해당 학교의 서류철에 보관한다.

부모/가디언/책임자 서명

날짜

학생 서명 (10 세 또는 그 이상)

학년

학생 이름 정자체로 _____

개정 2019 년 8 월